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166

발의연월일: 2025. 2. 14.

발 의 자:김도읍·장동혁·박형수

구자근 • 신동욱 • 조배숙

권영진 • 인요한 • 김희정

김석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공원, 어린이집, 육아종합지원센터, 초등학교, 특수학교, 유치원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아동들은 교육적 목적 및 맞벌이로 인한 돌봄 부재 등의 사유로 각종 학원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음. 이에 다수의 아동이이용하는 일정 이상의 규모의 학원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하여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순찰 및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을 통해 아동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중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제33조제1항 중 "배치·활용할 수 있다"를 "배치·활용하여야 한다"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	제32조(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
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)	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	①
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	
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	
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	
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	
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	
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	
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	
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「학원의 설립・운영 및 과
	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	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
	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
	<u>학원</u>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33조(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	제33조(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
치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	치 등) ①
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	
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	

찰활등	등 및	아동	지도	업무	등을
수행하	하는 여	아동역	안전	보호인	[력을
배치	• 활용	·할 수	= 있t	<u>구</u> .	
		. 53	-3 \		

② ~ ④ (생 략)

배치・활용하여야 한다.
② ~ ④ (현행과 같음)